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현찬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23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8일

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유광상, 신언근, 장홍순,
김동율, 김진영, 김춘수,
문종철, 오봉수, 김희걸 의원
(9명)

1. 제안이유

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을 통해 초기대응교육 이수자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할 필요 있음.

2. 주요골자

가. 시장에게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토록 함.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- (1) 신구조문대비표
- (2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평가”를 “평가 및 통계의 작성·관리”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7조(평가)</u> 매년 양성계획에 따른 시민안전 피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양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7조(평가 및 통계의 작성·관리)</u>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시장은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 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한다.</p>